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2025년 9월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는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면서, 그 재원 중 하나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납부하는 이익배당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현행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, 두 조례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
- 이에 공사의 결산이익금 중 일부를 종전의 ‘시 일반회계’가 아닌 ‘주택진흥기금’에 납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의 이익이 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공사의 결산이익금 처리 시 납입 대상을 종전 ‘시 일반회계’ 에서
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‘주택진흥기금’ 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